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73 발의연월일: 2021. 1. 5.

발 의 자:김태흠·성일종·구자근

김도읍 • 주호영 • 홍문표

이주환 • 정희용 • 권성동

윤두현 • 최승재 • 서범수

최춘식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의 지중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요청한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지중이설의 경우 국고 지원이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만 으로는 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2제3항 신설).

법률 제 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	제72조의2(가공전선로의 지중이
설) ①・② (생 략)		설)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발전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한다.
③ (생 략)		<u>④</u> (현행 제3항과 같음)